

이 회보는 공문과 동일하므로 신속 정확히 처리



남하면 회보

제2022 - 39호
2022. 10. 5.(수)

본 회보는 일반 공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각종 행정 지시사항을 종합 시달함으로 공문서 감축과 소비절약 및 행정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전 이장은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람

반 장	반 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이 장

♥ 행복이 남하도는 남하면
(www.namha.go.kr)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 | |
|----------------------|--------------------|
| - 남 하 면 장 : 940-7700 | - 총무담당 : 940-7710 |
| - 행복복지담당 : 940-7720 | - 개발담당 : 940-7730 |
| - 경제산업담당 : 940-7740 | - F A X : 940-7709 |

이장회의 시간(오전 11:00,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회의일 : 첫째, 셋째주 수요일 ☆

☆ 등청일 :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차 례〉

□ 총무담당

- 1. 남하면 연중 동향보고 안내1
- 2.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안내1
- 3.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2
- 4.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2
- 5.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2

□ 행복복지담당

- 1.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신청4
- 2. 「행복이 남하도는 냉장고」 공유냉장고 운영4
- 3.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4

□ 개발담당

- 1.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홍보5
- 2. 추계 도로정비 협조 안내5
- 3. 재난마을방송시설 환경개선 수요조사 안내5
- 4. 주택 및 온실 등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6
- 5. 영농폐기물(환경공단 수거불가 품목 등) 수거안내6
- 6. 석면의심 건축자재 사용 마을회관 조사 협조6
- 7. 빈집정비 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제 절차 홍보6
- 8.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7
- 9. 도로조명시설(가로등) 신설 및 이설 요청 시 유의 사항 안내7
- 10. 2022년 거창군민 안전 보험 안내8
- 11. 남하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평가 협조 안내9
- 12.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홍보9

□ 경제산업담당

- 1. 2022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15
- 2.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양파, 마늘, 밀” 가입기간 알림15
- 3. 2023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수요조사15
- 4. 2023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 안내16
- 5. 2022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16
- 6. 2023년도 조립 신청·접수 안내16
- 7. 2022년 2기 블루베리 재배 기술교육 안내17
- 8.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협조17
- 9. AI 특별방역대책기간(2022)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18
- 10.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알림18
- 11. 2022년 미래소비자 사과농장 수확체험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18

총무담당

1. 남하면 연중 동향보고 안내

[담당 : 이유라 940-7711]

행사·미담·수범사례·사건사고 등 마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주민여론 등 민심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 등 내방
 - 마을, 단체 등 행사 / 사건·사고
- 시 기 : 수시(발생 즉시)
- 방 법 : 남하면 총무담당 연락(☎055-940-7710)

2.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3]

지난 8월 31일 거창군과 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에서 군민의 힘으로 6만명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민·관 공동대응 실천협약을 체결하여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남하면의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2. 9. ~ 12.
- 추진목표 : 45명 전입(마을별 2명 + α)
- 마을별 목표인구

마을명	현재인구 (2022. 8. 22)	목표인구	증가인원	마을명	현재인구	목표인구	증가인원
총계	1,405	1,450	45				
대촌	77	79	2	산포	74	76	2
신촌	82	84	2	대야	83	85	2
안흥	131	134	3	오가	19	21	2
아주	72	74	2	용동	21	23	2
내곡	47	49	2	가천	61	63	2
상촌	94	97	3	자하	88	91	3
대곡	84	87	3	신기	64	66	2
양곡	70	72	2	장전	29	31	2
무릉	182	185	3	천동	49	51	2
월곡	55	57	2	대사	23	25	2

3.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3)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3. 1. 1.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지 증진사업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 문 의 : 거창군청 행정과(☎055-940-3182)

4.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3)

다가오는 576돌 한글날(10/9)을 맞이하여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양일자 : 2022. 10. 9.(일)
- 계양시간 : 07:00~18:00까지 계양하되,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계양 가능
- 홍보자료 : 【붙임 1】 참조
- 마을방송 안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예)
한글날 (10.9.)	10. 7.(금) 14:00	○○○○○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 9일은 576돌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계양합시다.
	10. 7.(금) 17:00	

5.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22. 9. 29.(목) ~ 10. 28.(금)
- 주택가격 공고문 :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제 출 처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거창군청 재무과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이의신청제출인 :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10월 1일은 제74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54주년 개천절, 10월9일은 576돌 한글날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신청

[담당 : 김태림 940-7724]

- 사업대상 : 독거노인(재가서비스, 장기요양 등), 장애인, 만성질환자, 조손가정 등
※ 제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 사업내용
 - AI인공지능스피커 : 긴급구조서비스, 정서지원용 말벗기능, 건강정보, 음원서비스 등
 - IOT생활감지센서기 : 활동, 호흡, 심박수 모니터링 통해 위급상황을 효과적으로 검출
- 사업수행기관 : 거창인애노인통합지원센터

2. 「행복이 남하도는 냉장고」 공유냉장고 운영

[담당 : 서현옥 940-7722]

- 공유냉장고란?
 - 이웃과의 음식나눔을 통해 음식물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지역에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랑 나눔 공유프로젝트
- 장 소 : 면사무소 1층
- 이용대상 : 전 주민
- 사업내용
 - 물품기부 및 나눔 : 누구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지역주민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
 - 공유가능 물품 : 과일, 채소 및 식재료, 반찬류, 가공품, 냉동식품, 빵, 간식류 등
 - 공유불가 물품 : 주류, 약품류, 불량식품, 쉽게 변질되는 식품 등

3.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 : 서현옥 940-7722]

- 발굴기간 : 연중
- 발굴주체 :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곤란가구
 - 빚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1.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굴착기는 기존 디젤 굴착기에 비하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작업환경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도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굴착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 대상

구 분	제작사	차 명	보조금(천원)	비고(문의전화)
3.5톤	호룡	iX35e	20,000	063-540-5511
1.9톤	호룡	iX17e	18,000	063-540-5511
1톤	호룡	iX10e	12,000	063-540-5511
1톤	이스쿠스	DaVinci10	8,000	042-863-7063
1톤	에브리코리아	TP10-E	2,000	02-6399-3833

2. 추계 도로정비 협조 안내

(담당 : 정종필 940-7732)

가을철 도로정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장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비기한 : 2022. 10. 12.(수)
- 정비대상 : 남하면 관내 주요 도로
- 정비내용 : 도로의 포장 및 배수로 상태, 청결상태 유지(낙하물 등의 이물질), 야생동물 처리, 도로변 지장물 제거 필요 등
- 요청서식

도로명	주소	도로 환경개선 요청 내용	비고
		예시- 도로 포트홀 발생 등	

3. 재난마을방송시설 환경개선 수요조사 안내

(담당 : 정종필 940-7732)

- 조사기한 : 2022. 10. 11.(화)
- 조사대상 : 남하면 관내 재난마을방송시설 중 케이블 재포설, 스피커 설치 및 이동이 필요한 방송시설
- 조사서식

시설위치	주소	환경개선요청 내용	비고
		예시- 마을방송 스피커 추가설치 등	

4. 주택 및 온실 등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풍수해 피해의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 협조바랍니다.

- 안내문 : 【붙임 1】 참조

5. 영농폐기물(환경공단 수거불가 품목 등) 수거안내

[담당 : 정종필 940-7732]

구 분	배 출 방 법
빈 농약병 및 페비닐	각 마을 배출장소를 통한 1차 수거 후 방문 수거 의뢰 수거위탁 : 표상년(010-4580-6593), 사전예약 필요
비료포대	봉투에 담거나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클린하우스 배출)
반사필름, 농약표기 없는 유사용기 (영양제, 착색제 등)	흘날리지 않게 묶어 '거창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 처리
곤포사일리지	생산자 수거품목(EPR),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 02-6952-3257)

6. 석면의심 건축자재 사용 마을회관 조사 협조

[담당 : 정종필 940-7732]

- 조사기한 : 2022. 10. 17.(월)
- 조사대상 : 2010년 이전에 건축한 마을회관 중 석면 건축자재사용 마을회관
【붙임 2】 참조
- 조사서식

마을회관명	소재지	건축연도	석면의심 건축자재		비고
			종류	자재면적(m ²)	

7. 빈집정비 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절차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건축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 절차가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 해체 시 사전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해체공사 허가 : 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전 적정성 검토
 - 해체공사 감리 : 감리자 전문성 강화 및 수행업무 등록 의무화
 - 해체공사 시공 : 작업자 업무 신설 및 허가권자 현장 관리 권한 강화
 - 처벌조항 신설 : 처벌강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내문 : 【붙임 3】 참조

8.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등)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이장님의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불법 배출 예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내 일반쓰레기 배출

○ 안내문 : **【붙임 4】** 참조

9. 도로조명시설(가로등) 신설 및 이설 요청 시 유의 사항 안내

[담당 : 정종필 940-7732]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조명 시설 설치신고 접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설치기준

- 도로의 종류·기능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 설치 간격은 5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
- 무분별한 신청으로 설치 후 포기서 제출이 많아짐에 따라 도로조명시설 신청 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

○ 설치 우선순위

- 위험한 절개지 및 계단이 있는 가파른 골목 50미터 이상과 도로(길) 아래 급경사 및 하천이 있는 지역
- 도로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세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거나 지역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많은 지역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를 요청한 경우
- 귀농·귀촌가구 및 공장(사업체)이 다수인 지역과 인구 및 공장(사업체) 종사자가 다수인 지역 등

○ 설치제한(조례 제9조)

- 도로조명시설(가로등)이 설치된 노선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10. 2022년 거창군민 안전 보험 안내

(담당: 정종필 940-7732)

- 기 간 : 2022. 1. 22. ~ 2023. 1. 21. / 1년마다 갱신
- 피보험자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청구방법
 - 청구시기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고
 - 서 식 : 홈페이지 청구서식 다운로드
 - 방 법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및서식] → [사업별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문 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 거창군 안전총괄과(055-940-3633)
- 보장내역

구분	보장항목	보장금액	비고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5	익사사고 사망	3,000만원	만15세 이상
6	의료사고 법률지원	최대 1,000만원	-
7	청소년유괴,납치 인질일당	100만원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만12세 이하
9	미아찾기 지원금	최대 100만원	만8세 이하
1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2,000만원	-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만15세 이상
1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
13	가스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1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15	감염병 사망	1,000만원	만15세 이상
1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17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18	유독성물질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최대 2,000만원	만65세 이상
20	헌혈후유증보상금	최대 100만원	-
21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

※ 감염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한함

11. 남하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평가 협조 안내 [담당 : 정종필 940-7732]

남하면 환경 가꾸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평가기간 : 2022. 1. ~ 12. (1년간)
- 평가항목 : 재활용품[폐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수거 실적 등
- 협조사항 : 재활용품[폐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수거 협조

12.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 신고전화 : 거창군청 건설과(☎ 940-3555), 경상남도 콜센터(☎055-120)
-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포상금
 - 지방도상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 시 : 10,000원
 - 지방도상 동물사체 발견처리 신고 시 : 20,000원

【붙임1 :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보험금 지급 사례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1. 주택

지급보험금	178,200,000원
피해내용	'20. 8월 집중호우로 주택전파 180㎡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16,000,000원

2. 온실

지급보험금	156,883,650원
피해내용	'19년 2월 태풍으로 온실 전파 2,800㎡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1,200,790원 자부담 1,086,42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15,000,000원

3. 소상공인

지급보험금	100,000,000원
피해내용	'21. 7월 집중호우로 상가 침수 1,300㎡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181,200원 자부담 53,80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없음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1,6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전반파	-	-	5,040만원	504만원
반파	800만원	-	3,600만원	360만원
소파	100만원(자진만 해당)	-	1,800만원	180만원
침수	200만원(상가주 소)	200만원	635만원	635만원

(주택 연적 80%, 90% 보상 기준)

가입안내

어디서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02-6900-3240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영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여재보험 02-2100-5105
- KD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인터넷 및 모바일(일부) 가입가능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보험관리지도시스템
(보험료 계산해보기)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22년 4월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일반 70 - , 차상위계층 77.5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 II)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대상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연간 보험료 & 보험금 예시

주택·온실·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 기여!

주택(80㎡ 기준, 90% 보장) (단위: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50,100
	정부지원	35,100
	자부담	15,000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총액	50,100
	정부지원	43,600
	자부담	6,500

7천 2백만원

온실(중대미파(A형) 하우스 90% 보장, 1천㎡ 기준) (단위: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258,900
	정부지원	181,300
	자부담	77,600

868만원

상가 (단위: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9,200
	정부지원	90,400
	자부담	38,8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71,200
	정부지원	49,800
	자부담	21,400

5천만원

공장 (단위: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62,900
	정부지원	114,600
	자부담	48,9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6,700
	정부지원	39,600
	자부담	17,100

1억 5천만원

5천만원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보상기준 & 상품안내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걱정 마세요!!

상품안내

상품명	가입대상	가입방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I)	주택·온실	개별·단체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II)	주택	단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III)	주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VI)	상가·공장	개별·단체

장액보상

주최·온실 풍수해보험 (I)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II)



100%
70%
50%
25%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 보상비를 보험가입금액에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실손보상

실손·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 (III)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VI)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

【붙임2 : 석면함유 건축자재 종류】

석면함유 건축자재

구분	제품명	석면함유량(%)	주용도	제품형태
지붕재	슬레이트	8~14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 건축물의 지붕에 적용	
천장재	석고 시멘트판 (천장텍스)	4~6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천장 마감재	
바닥재	아스타일	7~10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바닥 마감재	
내·외장재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6~12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의 칸막이, 벽체 등 마감재	
	베이스패널	8~14	건축물 외벽, 내벽, 칸막이 등 인텔리전트 건축물 및 고속도로, 철도의 반사형 차음판	
뿔칠재	철골내화 피복재	40~90	건축물 철골 방화, 방수, 보온 등의 뿔칠재로 사용	

【붙임3 : 빈집정비 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절차 안내】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해체계획서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작성기준 신설 및 건축 심의 도입
- 해체감리 업무 강화로 철저한 현장 관리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달라진 건축물 해체제도(2022년 8월 4일 시행)

해체공사 신고·허가 절차 강화

해체공사 신고절차



* 해체신고 대상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기준 준수

해체공사 허가절차



* 접수시스템 변경: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https://bdrm.go.kr)

해체공사 변경신고·허가 절차 신설

- 해체공사 중 변경신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변경: * 최광역면적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부호 변경)
 - 신고: * 해체계획서, 허가권인 및 현장관리인과 현장책임자 건설기술자 변경
 - 변경 허가: * 해체공법: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 해체공사의 순서: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 해체방법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식별 필요 여부
-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22년 8월 4일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절차를 준수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신고	허가
일부해체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면적 500㎡ 미만/건축물 높이 12m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미만의 건축물
그 밖의 해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층속·거주·저속(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전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신고대상이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함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절차 강화

구분	작성	검토	기술자
신고 대상	관리자	기술자	건축사사무소 기술자 신고를 한 자
허가 대상	기술자	-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된 자(건축구조, 건축사공, 건설안전기사)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적용 대상: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 *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기관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 *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 감리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영역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이력관리 등 현장 관리의 유무와 정확성을 확인하는 경우
- * 변경허가를 수리하는 등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필수확인영역의 해체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법 제183조 등에 따른 법률관리 점검기관에 위탁가능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대상은?

- * 건축의 사명성,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 10층 이상의 심미성을 고려해야 하는 건축물
-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 변경신고·변경허가 절차에서도 동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기준은?

-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업무 등에 관한 기준.'
-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기준 개정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자격 요건 강화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고제**
 - * 허가대상 건축물
 -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 * 신고대상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지침에 관한 서적을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 * 관리처 또는 해체작업자의 안전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작,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영역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시험장 구조 각 층에 해당되는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 자격**
 -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따른 관리자격이 있는(해체공사) 사(중)지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정회사는 제외한다.)
 -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이수한 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강화

-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제기에 매일 등록
 - 1. 공중, 관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 안전점검요령 현황
 - 3. 현장 특기사항(발생사유, 조치사항 등)
 -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감리업무 중 필수확인영역이 미연계 되면 감리사(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변위를 직접 확인하고, 촬영일지(요시영 사진 및 동영상)를 보존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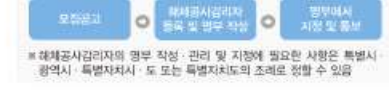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기준 신설

- * 건축물에 장애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함

안전점검요 필수확인점 작성에서 추가

- *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필수확인점) 기재**
 - 가시성 확보의 적정성, 안전으로 및 보도구간의 안전대책 등
 - 저서모드 설치 상태, 전세를 받을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해체장비의 제한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진도방지 대책 등
 - 수변 안전건축물 계속관리, 흙막이 가시성을 적정성 확인 등
- * **필수확인점검이란?**
 -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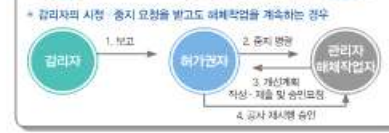
* 해체공사감리자의 경우 직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 * **주요업무:** 해체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여지 여부 확인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시정·중지 요청은?



* 감리자의 시정·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문의전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Tel. 1588-8788

【붙임4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1.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p>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p> 	<p>미세척 컵받, 컵라면 용기류 등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 미세척된 컵라면 용기는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움</p> 	<p>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 등 기름통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p> 
--	---	--

2.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p>과일망, 과일포장재 재활용이 어려움</p> 	<p>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깨진병, 판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움 ▷신문지에 싸서 버림</p> 	<p>도자기류, 사기그릇 재활용이 어려움▷불연성쓰레기로 배출</p> 
<p>아이스팩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 배출]</p> 	<p>보온보냉팩 재활용이 어려움</p> 	<p>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p> 
<p>CD/DVD, 고무장갑, 슬리퍼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p> 	<p>노끈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이 어려움</p> 	<p>기저귀, 화장지 재활용이 어려움</p>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의 분리배출앱** 을 참고해주세요

**2020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우리도 함께 합니다**



지구를 위한 선택
사실은 우리를 위한 실천
www.recycling-info.or.kr/act4r/





우리 가족이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행궤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p>종이상자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판, 택배영수증을 제거한 후 펼쳐서 배출</p>	<p>신문지 물에 젖지 않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p>	<p>종이팩 물로 헹군 후 평평하게 펴서 일반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p>
<p>플라스틱용기(페트병) 비닐로 된 상표를 제거한 후 발로 밟아 압축해 배출</p>	<p>비닐류(필름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두 차례 씻은 뒤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잠깐!!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중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p>	<p>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잠깐!!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경우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p>
<p>플라스틱(기타) 상표, 이물질 등은 제거한 후 배출 ⚠️ 잠깐!! 알약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중량제봉투에 배출</p>	<p>유리병 담배꽂초 등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철로 된 뚜껑은 분리해 고철로 배출 ⚠️ 잠깐!!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전구는 중량제 봉투로 배출</p>	<p>폐형광등·폐건전지 읍·면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배출 ⚠️ 잠깐!! 백열등, 전구,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중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p>



거창군

경제산업담당

1. 2022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매입기간
 - 포대벼 : 2022. 11. 07. ~ 12. 31. / 55일간
 - 산물벼 : 2022. 09. 26. ~ 11. 26. / 62일간
- 매입품종 : 해당(조생종), 추청(중만생종)
- 매입수량 (단위 : 포/40kg)

구분	합계	포대벼			산물벼	비고
		소계	일반벼	친환경벼		
배정량	10,890	9,525	2,245	7,280	1,365	
대상마을	-	-	지산 외 15개 마을	지산 5개 마을	지산 외 15개 마을	

- 매입가격
 -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30천원) 지급
 - 최종 정산은 쌀값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
- ※ 21년산 1등급 최종가격 : 74,300원/40kg

2.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양파, 마늘, 밀” 가입기간 알림

[담당 : 정화영 940-7742]

- 내 용

가입품목	가입기간	가입처
양파	2022. 10. 24. ~ 11. 25.	관내 지역농협 (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마늘	2022. 10. 4. ~ 10. 28.(난지형)	
	2022. 10. 4. ~ 11. 25.(한지형)	
밀	2022. 10. 11. ~ 12. 2.	

- 문의처 : NH농협 손해보험 ☎ 1644-8900

3. 2023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수요조사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2. 10. 6.(목)까지
- 대상 :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재배경력 3년 이상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경력을 인정받은 자
- 지원규모 : 0.2 ~ 1ha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내용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자동화비닐온실 신축 지원

4. 2023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2. 10. 24.(월)까지
- 대 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선정규모
 - 신규 1개소(총사업비 100억원 규모, 국비 40억원 한도 지원)
 - 2년차 사업('23 ~ 24년)으로 추진, 국비 연차별 50% 지원
- 내 용 :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 설치 지원
- 접 수 처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940-8235)

5. 2022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담당 : 최지에 940-7743]

- 접종기간 : 2022. 10. 1. ~ 11. 11.(6주간)
- 접종대상
 - 소규모농가 :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농가 (100%지원)
 - 전업농가 중 접종 지원 희망 농가 (50%지원)
 - * 전업농가 중 접종 지원 미 신청농가는 자가접종
- 소 사육농가 현황(남하면)

계		접종반 접종 지원				농가 자가접종	
호수	두수	소규모농가		전업농가중 접종지원희망농가		전업농가중 접종지원미신청농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74	1858	65	954	7	681	2	223

- 염소 사육농가 현황(남하면)

계		접종반 접종 지원		농가 자가접종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7	169	5	140	2	29

6. 2023년도 조림 신청·접수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한 : 2022. 11. 3.(목)까지
- 신청인 : 산주 직접 신청
 - ※ 종중이나 연명으로 되어 있어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종중대표 (종중회의록 등) 또는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 유의사항
 - 조림수종) 낙엽송, 고로쇠, 백합, 상수리, 자작, 헛개 등[2022년 기준]
 - ※ 편백은 고사율이 높아 신청 지양하며 호두나무 및 기타 유실수 등은 우선순위 배제
 - 조림사업은 자부담 10% 있음
 - 신청 수종은 100% 선정이 안 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보유 수종을 우선선정
 - 예산 및 신청량에 따라 다음 연도로 미뤄질 수 있음
 - ※ 의무조림지 및 편백고사지 우선 조림 실시

7. 2022년 2기 블루베리 재배 기술교육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한 : 2022. 10. 14.(금)까지
- 과정명 : 2022년 2기 블루베리 재배기술 교육
- 일시 : 2022. 10. 31.(월) 09:30 ~ 16:30 / 개회식 09:20
- 장소 :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
- 강사 : 경상국립대 김진국, 시설원예연구소 이재한
- 교육내용 : 블루베리 노지원예, 블루베리 시설원예

8.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협조 [담당 : 최지에 940-7743]

- 등록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

※ 축산관계자의 범위

축산관계자	세부 사항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가축의 소유지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지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등록방법 :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 (<https://eminwon.qia.go.kr/eminwon/selfNotify/mainSelfNotify.jsp>) 에서 축산관계자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제외요청 시 시·군 또는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 신청

9. 시 특별방역대책기간(2022)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시행기간 : ' 22.10.1.~' 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6.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10.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시행일 : 2022. 8. 18.(목)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유의사항 : 2022년 8월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제재사항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1. 2022년 미래소비자 사과농장 수확체험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

[담당 : 이필우 940-7741]

- 신청기한 : 2022. 10. 7.(금) 까지
- 신청대상 : 사과수확 체험이 가능한 사과 농가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체험기간 : 2022. 10. 24.(월) ~ 2022. 11. 18.(금)
- 주요내용 : 사과 수확 체험 프로그램 장소 제공
 - * 참여농가 : 체험인원 1인당 10,000원 보상금 지급